

##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

연번	의안번호	안 건	제안자	접수일자	의결일자	의 결	비 고
1	3359	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	이성용 의원 대표발의	2024.10.18.	2024.10.28.	원안의결	붙임1) 조례안
2	3360	순창군 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이성용 의원 대표발의	2024.10.18.	2024.10.28.	원안의결	붙임2) 조례안
3	3361	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	신정이 의원 대표발의	2024.10.18.	2024.10.28.	원안의결	붙임3) 조례안
4	3356	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10.15.	2024.10.28.	원안의결	
5	3357	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	순창군수	2024.10.15.	2024.10.28.	수정의결	붙임4) 수정안
6	3358	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10.15.	2024.10.28.	원안의결	
7	3362	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	순창군수	2024.10.25.	2024.10.28.	원안의결	
8	3363	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	순창군수	2024.10.25.	2024.10.28.	원안의결	

[붙임1]

**1. 안건 :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**

- 가. 제안자 : 의원발의
- 나. 접수일자 : 2024.10.18.
- 다. 심사일자 : 2024.10.22.
- 라. 의결일자 : 2024.10.28.

**2. 의결 : 원안의결(조례안 첨부)**

#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조례안

(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33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의 및 찬성의원 : 이성용 의원 외 6인

## 1. 제정이유

- 국민 안전 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인 협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선제적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-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창군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 시책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(안 제1조~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(안 제5조~안 제6조)
-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(안 제8조~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협의 등 : 행정과 협의
- 입법예고 : 2024. 10. 11. ~ 10. 20.(10일간)

## 4. 붙임자료

- 제정조례안

#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순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은 순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계획 수립)**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2.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)**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순찰,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·운영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
2. 실종예방·대응,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
3.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, 통학버스 점검, 지역 내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
5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

**제7조(범죄예방 시설물 설치)**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하여 「건축법 제53조의2제1항」에 따른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방치된 공가·폐가·주택 등 범죄 및 탈선 우려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
2. 공가·폐가·주택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현저한 장소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의회, 순창경찰서(이하 “경찰서”라 한다),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**제9조(실무협의회)**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**1. 안건 : 순창군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 ·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 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가. 제안자 : 의원발의
- 나. 접수일자 : 2024.10.18.
- 다. 심사일자 : 2024.10.22.
- 라. 의결일자 : 2024.10.28.

**2. 의결 : 원안의결(조례안 첨부)**

# 순창군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 ·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이 성 용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33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의 및 찬성의원 : 이성용 의원 외 6인

## 1. 개정이유

-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.

## 2. 주요내용

- 9조의 2(수입금의 납입)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,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다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, 「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협의 등 : 보건사업과 협의
- 입법예고 : 2024. 10. 11. ~ 10. 20.(10일간)

## 4. 붙임자료

- 개정조례안

# 순창군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 ·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보건의료원 · 보건지소 ·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 
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,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 
납입할 수 있다.



[붙임3]

**1. 안건 :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**

- 가. 제안자 : 의원발의
- 나. 접수일자 : 2024.10.18.
- 다. 심사일자 : 2024.10.22.
- 라. 의결일자 : 2024.10.28.

**2. 의결 : 원안의결(조례안 첨부)**

#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

## (신정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8.

발의 및 찬성의원 : 신정이 의원 외 6인

### 1. 제정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순창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5조)
-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(안 제6조)
- 업무의 협조,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(안 제7조~안 제8조)
- 실태조사 및 교육·홍보(안 제9조~안 제10조)
- 재정지원 및 시정요구 등(안 제11조~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」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,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
- 협의 등 : 기획예산실, 환경위생과, 행정과 등
- 입법예고기간 : 2024. 10. 11. ~ 10. 20.(10일간)

#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순창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회용품”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2. “다회용기”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, 하부기관
  - 나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순창군의회
  - 다. 「순창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한 기관
  - 라. 「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 중 순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순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공기관

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,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추진계획 수립·시행)**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3.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)**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

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
2.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
3.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,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업무의 협조)** 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8조(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)**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·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,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정적 지원)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정요구 등)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4]

**1. 안건 :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**

가. 제안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4.10.15.

다. 심사일자 : 2024.10.22.

라. 의결일자 : 2024.10.28.

**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**

#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1호나항 ‘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 를 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’ 로 수정한다.

안 제9조의2 중 ‘예약금을 배상해야 하며’ 를 ‘총 요금을 배상해야 하며’ 로 수정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(생략) 1. (생략) 가.(생략) 나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	제8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(현행과같음) 1.(현행과 같음) 가.(현행과같음) 나. <u>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.</u>
제9조의2(예약금의 배상) 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<u>예약금을 배상해야 하며</u> , 배상 기준일은 관리자가 통지한 날에 따른다. 다만, 천재지변에 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	제9조의2(예약금의 배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총 요금을 배상해야 하며</u> , ----- ----- -----